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5. 18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나. 발 의 자 : 김용범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5. 1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용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결산·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재정법」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「지방회계법」이 제정(2016.5.29.)되고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이 시행(2016.11.30.)됨에 따라, 근거 상위 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시행(16.11.30.)에 따라 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근거법 개정 (안 제2조)
- 예비비로 사용 금액 명세서 의회 제출기일 개정 (안 제3조제1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·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재정법」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「지방회계법」이 제정(2016.5.29.) 되고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이 시행(2016.11.30.)됨에 따라, 근거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
  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2조는 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근거법규를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9조에서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며,
  - 안 제3조제1항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“다음회계년도 5월 10일에서 다음회계년도 5월31”로 개정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  
- 본 조례안은  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7년    월    일

발 의 자 : 김용범 의원 외 5 명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결산·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재정법」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「지방회계법」이 제정(2016.5.29.)되고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이 시행(2016.11.30.)됨에 따라, 근거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시행('16.11.30.)에 따라 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근거법 개정 (안 제2조)
- 나. 예비비로 사용 금액 명세서 의회 제출기일 개정 (안 제3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  
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다음 회계 연도 5월 10일까지”를 “다음 회계 연도 5월  
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라 한다)은 <u>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</u>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·세출결산서(이하 “결산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<u>다음 회계 연도 5월 10일까지</u>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 ③ &lt;생략&gt; ④ &lt;생략&gt;</p>	<p>제2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라 한다)은 「<u>지방회계법 시행령</u>」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<u>다음 회계 연도 5월 31일까지</u>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&lt;현행과 같음&gt; ③ &lt;현행과 같음&gt; ④ &lt;현행과 같음&gt;</p>